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475 호

2002 년 9 월 27 일 금 요 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44호(지역별평균치(개발제한구역제외)고시) ---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45호(2002년도예산고시) ----- 5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429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 10
입안을위한공람 · 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435호(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 12
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436호(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 1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437호(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22
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 · 공람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439호(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 25
(인천대공원조성공사)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440호(노인건강진단실시공고) ----- 2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44호

지목별평균치(개발제한구역제외)고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4호에 의거 2002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지목별 평균치의 개요

가. 기 준 일 : 2002년 1월 1일

나. 단위면적 : m²

다. 지목현황 : 24지목

라. 고시내역 : “별첨”

2002. 9.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지목별 평균치 (개발제한구역제외)

(단위 : 원/m²)

구 분	평 균 치
전 체	307,838
전	205,820
답	156,430
과수원	165,877
목장용지	180,182
임야	72,503
광천지	-
염전	153,318
대	608,294
공장용지	245,100
학교용지	538,688
도로	197,327
철도용지	89,846
하천	55,322
제방	54,760
구거	136,169
유지	97,457
수도용지	111,095
공원	113,646
체육용지	-
유원지	112,500
종교용지	515,226
사적지	250,000
묘지	160,194
잡종지	215,518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45호

2002년도예산고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16일 제106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 9.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2002년도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	
합 계	170,435,186	162,287,445	8,147,741	5.1	
일 반 회 계	140,577,034	133,652,481	6,924,553	5.2	
특 별 회 계	29,858,152	28,634,964	1,223,188	4.3	
의료보호기금	2,674,564	2,672,021	2,543	0.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1,777,897	1,517,802	260,095	17.2	
주 차 장	6,766,004	5,844,000	922,004	15.8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828,287	2,828,287	0	0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7,942,644	7,942,644	0	0	
만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3,168,756	3,130,210	38,546	1.3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4,700,000	4,700,000	0	0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140,577,034	100	133,652,481	100	6,924,553	5.2
세입	지방세수입	20,236,572	14.4	19,376,241	14.5	860,331	4.5
	세외수입	36,388,083	25.9	30,846,193	23.1	5,541,890	18.0
	경상적세외수입	15,838,953	11.3	14,586,446	10.9	1,252,507	8.6
	임시적세외수입	20,549,130	14.6	16,259,747	12.2	4,289,383	26.4
	지방교부세	1,710,000	1.2	10,000	0.1	1,700,000	17000.1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34,242,033	24.4	34,072,033	25.5	170,000	0.5
	보조금	48,000,346	34.1	49,348,014	36.9	△1,347,668	△2.7
	국고보조금	30,491,236	21.7	31,685,153	23.7	△1,193,917	△3.7
	시·도비보조금	17,509,110	12.5	17,662,861	13.2	△153,751	△0.8
세출	경상예산	46,601,514	33.2	44,751,969	33.5	1,849,545	4.2
	인건비	24,777,535	17.6	23,982,457	17.9	795,078	3.4
	경상적경비	21,823,979	15.5	20,769,512	15.5	1,054,467	5.1
	사업예산	87,122,728	62.0	82,681,431	61.9	4,441,297	5.4
	보조사업	60,529,023	43.1	61,992,614	46.4	△1,473,591	△2.3
	자체사업	26,593,705	18.9	20,688,817	15.5	5,914,888	28.7
	채무상환	460,206	0.3	460,206	0.3	0	0.0
	지방채상환	460,206	0.3	460,206	0.3	0	0.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동	6,392,586	4.5	5,758,875	4.3	633,711	11.1
	예비비	1,691,889	1.2	1,068,178	0.8	623,711	58.4
	기타	4,700,697	3.3	4,690,697	3.5	10,000	0.3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140,577,034	100	133,652,481	100	6924553	5.2
성 질 별	인 건 비	24,797,554	17.6	24,002,476	18.0	795,078	3.3
	물 건 비	16,255,945	11.6	15,639,387	11.7	616,558	3.9
	이 전 경 비	41,558,004	29.6	42,214,884	31.6	△656,880	△1.6
	자 본 지 출	52,639,025	37.4	47,102,939	35.2	5,536,086	11.8
	용 자 및 출 자	300,000	0.2	300,000	0.2	0	0.0
	보 전 재 원	404,800	0.3	404,800	0.3	0	0.0
	내 부 거 래	2,269,817	1.6	1,169,817	0.9	1,100,000	94.0
	예비비 및 기타	2,351,889	1.7	2,818,178	2.1	△466,289	△16.5
기 능 별	일 반 행 정	38,487,796	27.4	36,293,966	27.2	2,193,830	6.0
	사 회 개 발	87,634,874	62.3	85,964,565	64.3	1,670,309	1.9
	경 제 개 발	9,419,884	6.7	6,744,141	5.1	2,675,743	39.7
	민 방 위 비	462,385	0.3	461,425	0.3	960	0.2
	지원및기타경비	4,572,095	3.3	4,188,384	3.1	383,711	9.2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29,858,152	100	28,634,964	100	1,223,188	4.3
세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외수입	24,781,131	83.0	23,557,943	82.3	1,223,188	5.2
	경상적세외수입	12,005,409	40.2	12,855,409	44.9	△850,000	△6.6
	임시적세외수입	12,775,722	42.8	10,702,534	37.4	2,073,188	19.4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조금	5,077,021	17.0	5,077,021	17.7	0	0.0
	국고보조금	1,560,977	5.2	1,560,977	5.5	0	0.0
	시.도비보조금	3,516,044	11.8	3,516,044	12.3	0	0.0
	경상예산	490,122	1.6	447,549	1.6	42,573	9.6
	인건비	69,686	0.2	60,461	0.2	9,225	15.3
	경상적경비	420,436	1.4	387,088	1.4	33,348	8.7
세출	사업예산	20,472,707	68.6	21,118,728	73.8	△646,021	△3.0
	보조사업	3,163,289	10.6	3,163,289	11.0	0	0.0
	자체사업	17,309,418	58.0	17,955,439	62.7	△646,021	△3.5
	채무상환	1,741,500	5.8	1,741,500	6.1	0	0.0
	지방채상환	1,741,500	5.8	1,741,500	6.1	0	0.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등	7,153,823	24.0	5,327,187	18.6	1,826,636	34.3
	예비비	7,132,280	23.9	5,308,187	18.5	1,824,093	34.4
	기타	21,543	0.1	19,000	0.1	2,543	13.4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29,858,152	100	28,634,964	100	1,223,188	4.3
성 질 별	인 건 비	69,686	0.2	60,461	0.2	9,225	15.3
	물 건 비	295,885	1.0	271,528	0.9	24,357	9.0
	이 전 경 비	2,777,572	9.3	2,768,581	9.7	8,991	0.3
	자 본 지 출	16,042,772	53.7	16,948,888	59.2	△906,116	△5.3
	용 자 및 출 자	1,776,914	6.0	1,516,819	5.3	260,095	17.1
	보 전 재 원	1,741,500	5.8	1,741,500	6.1	0	0.0
	예비비 및 기타	7,153,823	24.0	5,327,187	18.6	1,826,636	34.3
기 능 별	일 반 행 정	0	0.0	0	0.0	0	0.0
	사 회 개 발	17,283,354	57.9	17,939,585	62.6	△656,231	△3.7
	경 제 개 발	3,679,475	12.3	3,626,692	12.7	52,783	1.5
	민 방 위 비	0	0.0	0	0.0	0	0.0
	지원및기타경비	8,895,323	29.8	7,068,687	24.7	1,826,636	25.9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429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공고·공람

인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공람하오니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9.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인천도시계획시설 입안내용

가. 교통시설

○ 도로결정조서(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0	간석동 480-1	간석동 480-15	일반 도로		'77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0	간석동 480-1	간석동 480-15	일반 도로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호선	-	- 폐 지 - 연장 = 120m - 면적 = 810㎡ - 폭원 = 6m	기 사업승인된 간석동 408-1번지일원의 한별아파트에 간석동 407번지 한서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사업승인시 동 필지를 횡단하는 도로를 폐지하여 사업승인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폐지하고자 함

○ 주차장결정조서(안)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노 외 주차장	간 석 동 900-29번지외4필지	-	증)898	898		
신설		노 외 주차장	간 석 동 901-43외3필지	-	증)685.2	685.2		
신설		노 외 주차장	고잔동 212-7번지	-	증)435	435		

나. 도시공간시설

○ 공원결정조서(안)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 원	어린이공 원(쉼터)	남동구 간석동 746-11		증)119	119		

2.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사), 남동구 홈페이지 게재, 구보게재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032-453-2683)

5. 첨부 : 도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435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9.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안)

2.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 현행규칙 별표2의 과태료 기준금액이 환경부 예규개정에 따라 수시 변경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환경부 예규「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규칙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에 있어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함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신고대상 및 유효기간, 지급한도액, 지급시기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증가추세에 있는 포상금 지급시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의견진술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2. 10. 16 일 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전화(453-239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예행규정 별표2를 준용한다
- ②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부과기준의 2분의1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등) ①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신고대상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에 한한다.
2. 신고포상금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만 지급한다.
3. 무단투기 신고자 1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월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월1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고 포상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3호에 의한 신고포상금중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시 익년도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과태료 부과후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제10조관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법제63조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별표2를 준용한다. ②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부과기준의 2분의1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등)①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신고대상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에 한 한다. 2. 신고포상금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만 지급 한다. 3. 무단투기 신고자 1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월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월1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 (안)
<신설>	4. 제3호에 의한 신고포상금중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시 익년도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과태료부과 후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제10조관련) 삭제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436호

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이전(폐차)명령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아래 공고 기간까지 자진이전(폐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 매각)하고 아울러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9.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2년 9 월24 일 ~ 2002년 10 월 8일 까지(15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02년10 월 8 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3-2 ☎ 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고잔동 184번지 ☎ 442-6660
 - 기전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 814-4400
4.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경기37노 1632 외 57대

공 고 대 상 차 량

연번	강제처리대상차량		강제처리 대상차량 소유주		방치장소	비 고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578	경기37노 1632	쏘 나 타	전 재 익	인천남동구간석동48-11 전일주택201호	간석4동우성2차정문	
579	인천1머 2222	르 망	김 일 진	인천남동구구월동1300-16	인천남동구구월4동1 278-5소나무어린이 집	
583	인천7모 5215	포 터	조 수 압	인천남구도화동597-9	간석매매뒷골목	
586	인천2거 4457	롱 코 드	김 인 호	인천연수구선학동372-2호 202호	간석4동616-1에넥스 신신자동차공업사뒤	
587	인천7그 1586	포 터	신 전국자 동차매매	인천남구주안동1412번지 가동210호	간석4동616-1에넥스 신신자동차공업사뒤	
588	경기8루 7109	마 이 티	(주)대덕 가구	경기도김포군고촌면신곡리 960-1호	간석4동616-1에넥스 신신자동차공업사뒤	
593	인천3고 7597	코 란 도	김 일 겸	인천남동구간석동141-27호 주공(A)37/302호	간석2동146-2	
594	서울8루 2953	와이드봉고	김 경 식	서울동작구대방동375-19호	인천폐차	
595	경기37도 9296	세 피 아	최 윤 철	경기도부천시오정구오정동 614-2에립빌라302호	인천폐차	
596	경기71다 3589	베 스타	김 성 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 374-5백조(A)108/306호	인천폐차	
597	인천1고 8025	르 망	강 인 설	인천남구학익동306-161 동은빌라102호	인천폐차	
598	서울2호 1809	스 쿼 프	강 상 선	서울송파구오금동85번지	인천폐차	
599	경기39너 1570	쏘 나 타	이 선 구	경기도평택시합정동829번 지주공(A)405/303호	인천폐차	
600	경기39마 7382	수퍼살롱	진 영 희	경기도안산시선부동 1056-14호	인천폐차	
601	서울4스 2352	엘란트라	김 찬 옥	서울관악구봉천동661-50호 미도맨션101호	인천폐차	
602	서울6누 3617	베 스타	최 윤 이	경기도안산시초지동738번 지그린(A)1822-905호	인천폐차	
603	인천31더 9473	코 란 도	김 광 배	인천남동구만수동953-27호 천우다세대가동B02호	인천폐차	
604	서울5러 2376	베 스타	이 동 수	서울구로구고척동261-23호	인천폐차	
605	인천83가 6462	와이드봉고	김 경 순	인천서구당하동820-1 태평(A)105동1102호	인천폐차	

공 고 대 상 차 량

연번	강제처리 대상차량		강제처리 대상차량 소유주		병치장소	비 고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606	인천2라 5769	캐 피 탈	박 중 국	인천남구도화동624-249호	인천폐차	
607	경기1부 9353	쏘 나 타	이 상 략	경기도고양시일산구법곡동 1191-12호	인천폐차	
608	인천2고 3065	티 코	이 성 순	인천남구용현동208-11호	인천폐차	
609	인천33나 3597	엑 셀	우 경 복	인천남구용현동451-11호	간석3동94-12앞	
612	인천86바 5837	마이티장축	김 성 곤	인천남동구남촌동330-20호 재일빌라나동103호	간석3동105만월산터 널공사정문경비실	
617	경기2추 5086	티 코	김 규 성	경기도고양시일산구일산동 1133-6호	고잔동184번지서울 폐차장위도로	
618	인천8너 1282	2.5t	김 학 철	인천남구송의동290-39호	구월동1142-17호	
622	인천1머 4043	콩 코 드	이 강 일	인천부평구십정동201-18호	간석3동913-14호	
623	서울83터 3023	냉 동 차	강 동 남	경기도시흥시정왕동1875-5 건영(A)210/206호	구월1동1181-4(경찰 주택)	
627	인천7러 5615	프라이드벤	전 춘 수	인천남동구만수동886-36호 韓밀리다세대3동B01호	간석1동한진(A)정문 건너편	
634	인천31다 4069	쏘 나 타	정 해 봉	인천남동구장수동515-1	북개천1-3공영주차 장내	
635	인천7가 9635	점보타이탄	동천석유 (주)	인천남동구구월동1305-1호	북개천1-3공영주차 장내	
636	인천7더 5384	바네트트럭	손 미 애	인천남동구간석동777-23호 강덕그린빌라A/202호	북개천1-3공영주차 장내	
637	인천80마 1868	포 터	이 정 순	인천남동구만수동926-1호 이화다세대주택B02호	북개천1-3공영주차 장내	
638	경기87가 7776	와이드봉고	이 수 맹	인천남동구만수동879-15호	북개천1-3공영주차 장내	
641	인천4나 7526	쏘 나 타	최 해 용	인천남동구구월동765	만수동북개천1-1.2공 영주차장	
645	인천2라 2769	캐 피 탈	김 용 호	인천남구용현동627-47호 한국(A)101/1803호	인천폐차	
652	인천1러 4478	프 린 스	최 정 회	인천서구경서동183번지	간석동167-29청원어 린이집	
654	인천73노 3900	다 마 스	(주)세일 맨파워	인천남구주안동190-5번지 성업빌딩3층303호	논현동423-2호15B/3 L	
658	대전30누 5506	그 랜 저	(주)신아 약품	대전중구선화동114-2호2층	만수1동978-25호 만수빌딩	

공 고 대 상 차 량

연번	강제처리대상차량		강제처리 대상차량 소유주		방치장소	비고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571	인천31마 2188	엘 란 트 라	김 미 자	인천남동구만수동111-174 신성빌라201호	간석3동1-152앞	
590	인천7나 4878	마 이 티	노보애기 공(주)	인천남동구고잔동643-12호	만수1동931-6복개 천 삼지빌라부근	
610	인천31라 5394	쏘 나 타	최 성 규	인천남동구만수동885-5호 예원다세대주택101호	간석3동916-18(정진 학원뒤)	
633	인천4나 6383	엘 란 트 라	손 정 익	서울강서구염창동273-3호	복개천2-2공영주차장	
646	인천31러 8575	쏘 나 타	구 지 훈	인천서구가정동567번지 한국(A)102/306호	만수1동931뒤복개 천 장애인협회	
655	인천83가 5249	포터더블캡	양 동 수	인천서구신현동147-19호	상공회의소근처공원	
656	인천6가 4661	현대에어고 속버스	(사법)한 국민속예 술연구원	서울 종로구돈의동125-1	고잔동726-7호155B/7 L	
659	경기2크 7546	스 쿨 프	이 영 직	경기도구리시교문동752-12	만수1동948-4호	
660	인천30나 5152	르 망	김 보 현	인천남동만수동950-6호 만수다세대주택 라-B01호	만수1동948-4호	
662	인천70다 3017	베 스 타	김 영 권	인천연수구청학동476-2호 B04호	구월팬더(A)6동도로 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437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공람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공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453-268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내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9.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85-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사회복지시설
 - (2) 명 칭 : 만수동 1085-6번지 장애인복지관 별관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
 - 지하 1층 A=401.1㎡
 - 지상 1층 A=261.2㎡
 - 연 면 적 A=662.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2. 9. ~ 200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첨」
8. 도시계획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0. 첨 부 : 관계도서(계재 생략)

토 지 조 서

▲ 공시명 : 남동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공사

번 호	소 제 지			면 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등 명	지 번	지 목	공 부	평 임	잔 여		성 명	주 소		구 분	성 명	주 소	
1	민수	1085-6	대	525.6	525.6	0		이 성 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9번지 한양아파트 31동1102호					

지 장 물 조 서

◆ 공사명 : 만수동 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공사

번호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편면면적	잔여면적	총면적			성명	주소	
1	만수	1085-6	2.18	0	2.18	FRP	변소	권오순	남동구 만수1동 1005번지 주공아파트 802/1202호	
2	만수	1085-6	47.13	0	47.13	콘테이너박스	사무실			
3	만수	1085-6	63.87	0	63.87	콘테이너박스	사무실			
4	만수	1085-6	63.87	0	56.38	콘테이너박스	사무실			
5	만수	1085-6	140.21	0	140.21	철골.보온천막	공장			
6	만수	1085-6	합석 57.5㎡				담장			
7	만수	1085-6	철골.합석 1조				대문			
8	기타시설장비(탁상보리방1대, 카타기2대, 용접기3대, 콤팩트사2개, 지게차1대, 사시따는기계1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439호

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장의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인천대공원조성공사)에 편입된 토지등의 수용재결신청전에 대하여 2002. 8. 20일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재결서정본을 소유자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불입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우리구 도시정비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2. 9.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인천대공원조성공사>
3. 재결 일자 : 2002. 8. 20
4. 공 고 기 간 : 2002. 9. 26 - 2002. 9. 9
5. 재결서정본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남동구청도시정비과
 - 전 화 : (032)453 - 2664
6.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 이원춘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32(6/1)
 - [관계인] "해당없음"

7. 기 타

재결서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440호

노인건강진단실시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2002년도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9.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실시기간 : 2002. 10. 11 ~ 2002.11.30
2. 장 소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34 - 4 위치)
3. 진단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부설 가족보건의원 · 중앙병리검사실)
- 4.검진대상 : 남동구 거주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17명(별첨 참고)
단, 2001년 진단자중 건강자는 제외
5. 접수기간 : 2002. 09. 27~2002.10.02
6. 접 수 처 :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사회복지과(☎453-238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2002년 노인건강진단 대상인원수

(단위 : 명)

동 명	인원	검 진 일 시	검 진 장 소	비 고
계	17	2002.10.11(금) (09:00~12:00)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구월1동	1	"	"	
구월2동	1	"	"	
구월3동	1	"	"	
구월4동	1	"	"	
간석1동	1	"	"	
간석2동	1	"	"	
간석3동	1	"	"	
간석4동	1	"	"	
만수1동	1	"	"	
만수2동	1	"	"	
만수3동	1	"	"	
만수4동	1	"	"	
만수5동	1	"	"	
만수6동	1	"	"	
장수서창동	1	"	"	
남촌도림동	1	"	"	
논현고잔동	1	"	"	

